

인재개발위원회 규정

(제정 2020. 9. 1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인재 개발 관련 진로 및 취·창업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재개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인재개발 관련 부서별 기본운영계획(연간계획)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진로 및 취·창업 지원사업 간 중복 방지를 위한 조정 및 연계에 관한 사항
3. 전체적인 진로 및 취·창업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인재 개발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인재 개발에 관한 주요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대외부총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. <개정 2024.3.31.>

③ 교육혁신본부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, LINC3.0사업단장, 창업지원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되 지자체 및 산업체 등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22.3.29.>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진로취업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2.3.29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3.31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